

# 행정자치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센터 사후관리 미흡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하동군, 함양군

내 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할 경우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10년(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동군은 2005년 ○○○○○○○○○○ 대표 ○○○가 보조금(국비 560백만원)이 지원된 ○○○○○○○○○○센터를 승인없이 임의대로 2015. 7. 30. ○○○○조합에 담보(650백만원)로 제공하고, 사후관리기간(2006. 4. 17~2016. 4. 16)이 초과되는 등 보조금으로 지원된 ○○○○○○○○○○센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함양군(○○○○과)은 2010년 ○○○○ 대표 ○○○이 국비 417백만원, 지방

비 167백만원 총 584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센터를 승인 없이 임의로 2013. 8. 21 ○○○○○○조합에 담보(120백만원)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주)○○○○에서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2013. 8. 21) 이후 함양군(○○○○과)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2차례(2013. 10. 23, 2014. 3. 19.)에 걸쳐 ○○○○○센터 근저당 설정해지 독촉을 하였으나, (주)○○○○에서는 근저당 설정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상남도(○○○○과)에 2014. 10월경 국고보조시설물 담보 제공 승인 요청을 하였다.

경상남도(○○○○과)는 (주)○○○○의 국고보조시설물 담보 제공 요청 금액(120백만원)이 담보 제공 승인 한도액 54백만원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주)○○○○에 2014. 10. 27. 담보 제공 불승인(○○○○과-00000호) 통보하자, 함양군(○○○○과)은 2014. 11. 7. 국고보조시설물 담보 제공 불승인에 따른 조치계획(내부결재, ○○○○○과-00000호<sup>225)</sup>)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함양군(○○○○과)은 (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센터에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했어야 하고,

또한 임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도록 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으로 지원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표 ○○○○○○○○○○○센터 미승인 근저당 설정 현황】

| 법 인 명<br>(대 표 자)          | 소 재 지                 | 설치년도<br>(준공일자)       | 총사업비(백만원) |     |     |     | 시 설 내 역                                   | 근 저 당 설 정 |     |              |             |
|---------------------------|-----------------------|----------------------|-----------|-----|-----|-----|-------------------------------------------|-----------|-----|--------------|-------------|
|                           |                       |                      |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 설정기간      | 해제일 | 설정액<br>(백만원) | 근저당<br>설정은행 |
| 조경수 ○○○○<br>유통센터<br>(○○○) | ○○군 ○○면<br>○○리 00     | 2015<br>(2006.4.17.) | 800       | 560 | -   | 240 | 유통센터(396㎡)<br>온 실(623㎡)<br>조경수전시장(8,880㎡) | 2015.7.30 | -   | 650          | ○○○○        |
| (주)○○○○                   | ○○군 ○○읍<br>○○로 000-00 | (2010.12.15)         | 834       | 417 | 167 | 250 | 유통센터창고(487.83㎡)                           | 2013.8.21 | -   | 120          | ○○○○        |

225) (주)○○○○에서 담보 제공한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을 빠른시일내에 해지하도록 독촉 또는 경남도에서 승인하는 금액(54백만원) 이하로 담보 금액을 재 설정하여 경상남도에 담보 승인을 재신청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주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센터가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센터 사후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는

[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한 센터에 대해 근거당 설정을 해지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